

2025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경종) 하반기 등록신청 공고(2차 수정)

2025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경종) 하반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(신청기간 연장: 당초 ~8.29일 → 변경 ~9.5일)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26일

충청북도지사

1. 신청기간 : 2025. 8. 4. ~ 9. 5.

2. 신청장소 : 법인·단체 소재지 시·군청 사업담당과

* 신청 농지가 여러 시·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, 법인·단체 소재지 시·군에 신청

3. 신청대상

가. 신청농지 자격요건

○ ①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, 저탄소 영농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②벼재배 논

①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

② 지목 관계없이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

○ 다만, ①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,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, ③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

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

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(11.30일)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

-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(보조금, 배출권 등)를 받고 있는 경우

나. 신청인 자격요건

- ①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 농업에 종사하며, 소속된 농업인·농업법인(이하 '농업인 등') 소유(임대차 포함) 필지를 포함하여 ③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(이하 '법인·단체')
- ① 「농업·농촌 공익직불법」 제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·단체
-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등
- ③ 법인·단체 신청 면적은 폐경·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20ha 이상이어야 함.
 - * 법인·단체 구성원(농업인 등)은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이어야 하며,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, 농업법인 50ha,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로 기본형 직불과 동일
- ④ 농업법인은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, 생산자단체는 「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
- 다만, ①기본직불금 지급 제외,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및 ③유사사업 참여 농업인 등은 제외
-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
-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(11.30일)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
-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(보조금, 배출권 등)를 받고 있는 경우

4.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

활동명	주요 내용	단가
가을갈이	▶ 벼 수확 후 그루터기(또는 벼짚) 잔사를 토양에 혼입 * 경운 정도는 그루터기가 토양에 혼입될 수 있는 깊이로 쟁기 또는 로터리 경운 시행 **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필지 참여 불가 *** (증빙방법) 가을갈이 이행 후 경운된 필지 증빙사진 제출	46.0만원/ha (46원/m ²)

○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

- 지급금액 : 활동별 지급단가(원/m²) ×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(m²)
- 지급한도액 기준 : 농업인 30ha, 농업법인 50ha,

공동농업경영체* 농업법인(들녘경영체) 400ha

* 「농업경영체육성법」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,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, 농업법인 50ha를 적용

○ 활동완료시기 : 11.9(일)까지

5. 신청방법

○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·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인·단체 소재지 시·군에 등록신청

* 법인·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필요

《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》

구 분	제출서류
1. 등록신청서	▶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(별지2호) ▶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(별지3호) ※ 지자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(별지2호)를 통해 기본 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·단체 소속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(별지3호)를 인쇄·배부
2. 법인·단체 증빙서류	▶ 농업법인·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, 명부 등

- 법인·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 참여 희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·군 사업담당과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
- 시·군 사업담당자가 법인·단체 대표가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검토한 후 세부 등록신청서 출력 및 전달
- 법인·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에게 세부 등록신청서 개별 배부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필지 및 이행활동을 선택·작성하여 취합 및 시·군 사업담당과에 최종 제출

6. 유의사항

가. 사업대상자 선발기준

- 사업대상자 선정 시 예상감축량과 참여 농업인이 많을수록* 우대, 참여 의사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** 감점

*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관련 사업시행지침 참고

** 직전년도 사업 결과 사업 포기 등으로 최종 사업 면적이 최소면적기준('24년 50ha, '25년 이후 20ha)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활동의 이행 증빙률이 70% 미만인 경우는 감점

나.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포기

- 사업대상자(농업인 등) 및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·군청장에게 제출
 - 참여 농지의 매도,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필지의 이행 활동이 어려운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필지의 참여 제외
- 사업대상자가 사망(뇌사 포함)한 경우 및 고령·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신고 승계대상 요건을 갖춘 자가 승계 가능
- 사업참여 법인·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표가 사업대상자 2/3의 동의를 받아 사업포기 신청서(단체)를 작성하여 신청한 시·군에 제출
- 법인·단체 소속 개별 농업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업포기 신청서(개인)를 작성하여 신청한 시·군에 제출

- 단체 참여 경영체의 2/3 이상이 개인 포기를 한 경우 해당 법인·단체의 참여 포기 처리

다.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

- (준수사항)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농지에서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증빙시스템에 등록
 - * 법인·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이 정해진 시기에 이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
 - * 증빙제출기간 (가을갈이) 9~10월
- 이행점검(서면·현장) 결과에 따라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활동비 최종 산출
- (부정수급 관리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, 준수사항 위반·이행점검 미이행·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·단체 소재지 시·군청 또는 한국농어촌공사(044-864-6959)에 문의하시거나, 농림사업정보시스템(www.agrix.go.kr)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